

 신안산대학교	한국어연수과정 운영 규정	규정번호 3-1-18 제정일자 2021. 8. 20. 개정일자 2024.4.15. 책임부서/팀·계 국제교류협력원
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3. 6. 21. 개정> <2024. 3. 20. 개정>

제2조 (과정) ① 한국어연수과정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. <2024. 3. 20. 개정>

② 정규과정은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로 나뉜다.

③ 필요에 따라 한국어연수과정 외의 특별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. <2024. 3. 20. 개정>

제2장 수업연한 및 수업방법

제3조 (수업연한) ① 정규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4학기로 한다.

② 정규과정의 모집 기간 외에 입학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하여 별도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2022. 11. 24. 개정>

③ 특별과정은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운영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1. 정규과정 입학허가를 받고 여러 사정에 의해 입학시기가 지연된 경우

2. 단기과정 개설이 필요한 경우

3. 기타 국제교류협력원에서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개설한 경우<2023.6.21., 2023.12.7. 개정> <2024. 3. 20. 개정>

제4조 (수업방법 및 수업시간) ① 정규과정은 한 학기에 10주 동안 200시간의 수업을 진행한다.

② 수업 과정은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체험으로 구성된다.

③ 수업시간은 정규과정의 경우 오전반은 09시부터 12시 50분까지, 오후반은 14시부터 17시 50분까지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.

④ 특별과정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조정한다.

제3장 입학

제5조 (지원자격) ① 고등학교 이상 졸업(예정)한 사람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지원자의 국적에 따라 별도의 학력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다.

제6조 (지원서류) ①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입학지원서
2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
3.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
4. 가족호구부 및 신분증 사본
5. 여권사본
6. 사진 4매 (3×4)
7. 잔고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8. 신원보증서 (해당자에 한함)

② 전항의 지원서류는 지원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제7조 (원서수수료) ① 처음 입학 지원하는 경우 소정의 원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<2022. 11. 24. 개정>

② 최종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원서수수료를 면제한다.

<2022. 11. 24. 개정>

제8조 (입학허가) ①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원서수수료와 수업료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② 비자신청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표준입학허가서(정부공인양식)를 발급한다.

제9조 (입학)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입국을 하여 본 원의 교육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제4장 등록

제10조 (등록) ①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<2022. 11. 24. 개정>

② 학생의 등록기일은 강의 개강일 및 학생의 입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. <2022. 11. 24. 개정>

제11조 (미등록) ① 등록기일까지 수업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의 사유로 제적처분을 내릴 수 있다. <2022. 11. 24. 개정>

② 제1항의 미등록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미등록한 수업료의 납부기한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제5장 학적변동 <2022. 11. 24. 개정>

제12조 (휴학) D-4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학생의 경우 휴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단, 질병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2월 이상의 장기 치료 또는 휴식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할 수 있다.

제13조 (제적)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동급 수업을 연속 3회 유급한 사람
2.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

3. 한국어 연수 목적에서 벗어나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제활동 등 기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한 사람

4. 기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(예 : 학내 외 폭력, 약물복용, 학교 및 주변인에게 심리적/물리적 피해를 끼치는 경우 등)

제14조 (자퇴) 자퇴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5조 (징계자 환불) 제13조 각 호에 의거하여 제적된 자는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
제16조 (제적자 재입학)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.

제6장 수료 및 진급

제17조 (수료) 과정별, 학기별 수업시간의 70% 이상을 출석하고,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수료를 인정한다. <2023. 6. 21. 개정>

제18조 (진급) ① 한 급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급에 자동으로 진급한다.

② 유급을 했으나 다음 급으로 진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시험을 거쳐 진급이 허가될 수 있다.

제7장 시험 및 성적

제19조 (시험)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한다.

제20조 (미 응시자 인정점수) 학생은 모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. 단,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심사하여 재시험을 통해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.

제21조 (재시험) ① 수료를 하지 못한 사람 중 평균성적이 50점 이상이고 동일한 급의 유급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② 재시험은 필기시험과 인터뷰로 이루어지며 각각 70점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진급할 수 있다.

제22조 (성적평가) 학업성적은 각종시험의 결과는 수업참여도 및 과제물 등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제23조 (성적표시) 학업성적은 100점(만점)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구분	태도		중간				기말				총 합계
비율	20%		40%				40%				100%
영역	과제 10%	태도 10%	읽기 10%	쓰기 10%	말하기 10%	듣기 10%	읽기 10%	쓰기 10%	말하기 10%	듣기 10%	

제8장 출석인정

제24조 (병결) 본인이 긴급한 치료의 목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진단

서에 근거하여 최대 2주까지 병결에 의한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.

제25조 (경조사) 본인 및 직계가족 (부모, 형제, 조부모)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최대 2주까지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. <2022. 11. 24. 개정>

제9장 장학금 및 포상

제26조 (장학금) 연수과정 중 출석 및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. <2023. 6. 21., 2023. 12. 7. 개정>

성적장학금(학기당)		개근상 (학기당)	모범장학금 (학기당)	특별상 (학기당)	토픽3급 취득자	토픽2급 취득자	학부 입학축하금 (본 대학 진학자에 한함)
최우수	우수						
20만원	10만원	5만원	5만원	5만원	30만원	10만원	30만원

제27조 (포상) ① 각 급/반별 성적 1등의 학생에게는 최우수상을 수여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② 각 급/반별 성적 2등 학생에게는 우등상을 수여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③ 매학기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한다. 단, 제20조에 의한 징계 학생은 제외한다.

④ 타의 모범이 되어 담임강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는 모범상을 수여한다.

⑤ 특별과정의 경우 과정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⑥ 학기 중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토픽 취득자(토픽2급 및 토픽3급)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한다. <2023. 6. 21. 개정>

⑦ 삭제 <2023. 6. 21. 개정>

⑧ 본 대학 한국어교육과정을 수료 후, 본 대학 학부 과정 진학자에게는 학부 입학축하금을 수여한다. <2023. 12. 7. 제정>

제10장 등록취소

제28조 (등록취소)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1. 본 원에 입학을 허가받고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이 입국을 하지 않고 비자승인 철회와 함께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
2. 본 원에 입학허가를 받기 위해 수업료를 납부하였으나 비자승인의 불허로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

② 본원에 입학 전 또는 입학한 학생이 미입국, 영구귀국포기, 대학진학, 타교전학, 학습포기,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1. 개강 이전 : 수업료 전액 반환
2. 수업일수 1/3 경과 이전 : 수업료의 2/3 반환
3. 수업일수 1/2 경과 이전 : 수업료의 1/2 반환
4. 수업일수 1/2 경과 이후 : 수업료 반환 없음

-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 <2022. 11. 24. 개정>

제11장 기숙사

- 제29조 (기숙사)** ① 한국어연수과정 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해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다.
②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2024. 3. 20. 개정>

제12장 강사 위촉 <2022. 11. 24. 신설>

- 제30조(강사 자격)** 강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.
- ①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
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육 경력이 있는 자 <2024. 3. 20. 개정>
③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
- 제31조(강사 위촉)** ① 강사는 국제교류협력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 <2023.6.21., 2023.12.7. 개정><2024.4.15. 개정>
- ② 강사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생략 할 수 있다.

1. 강사 추천서
2. 이력서
3. 관련 자격증
4. 최종 학력증명서
5. 경력증명서

6. 기타 국제교류협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<2023.6.21., 2023.12.7. 개정><2024.4.15. 개정>

- 제32조(강사의 임무)** ① 강사는 담당 교육과정에 충실하여야 하며,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강사의 임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강사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재위촉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
- 제32조의 2 (강의료 지급기준)** ① 한국어연수과정의 강사 강의료의 지급기준은 (별표 1)에 의한다. <2024. 3. 20. 개정>

제 13 장 기 타

- 제33조(유치홍보비 지급)** ① 한국어연수과정 외국인어학연수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어학연수생 지원자가 등록한 1년(4학기) 수강료의 10%이내에서 유치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어교육과정 외국인어학연수생 유치홍보비 협약서에 따른다.

제34조(어학연수생의 권리와 의무) ① 어학연수생은 유학생 및 내국인 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.

② 어학연수생은 외국인 학생으로서 유학기간 동안 법적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 국내의 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고 활동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.

제35조(주거) ① 어학연수생은 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

② 본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어학연수생은 생활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제교류협력원장원의 허가를 득하여 교외 거주지에서 생활 할 수 있다. <2023.6.21., 2023.12.7. 개정> <2024. 3. 20. 개정>

제36조(고지) ① 어학연수생은 입국 후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및 신고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어학연수생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③ 어학연수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각종 법 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어겨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진다

제37조(개인정보보호)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처리와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제교류협력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한다. <개정 2023.6.21., 2023.12.7., 2024.4.15.>

② 본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준영구로 한다.

제38조(기타)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른다.

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1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6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3조(수업연한), 제26조(장학금), 제27조(포상), 제31조(강사위촉),

제35조(주거), 제37조(개인정보보호)는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<2024. 3. 20. 개정>

■ 한국어 강사 강의료 지급기준

강의료 지급기준	강의료(원/시간당)			비고
	기본급	수강인원(반)	강의료 기준	
-한국어 강사 (한국어연수과정 일반강사)	35,000원	0~20명	기본급	반 수강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-한국어 강사 (한국어연수과정 급별 지도교수)		21~30명	기본급+2,000원	
-한국어 강사 (한국어연수과정 책임교수)	38,000원			급주임 및 책임교수는 반 인원 상관없이 기본급으로 지급한다.
	40,000원			